

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

제정 2000. 9. 1
 개정 2005. 9. 1
 개정 2008. 9. 1
 개정 2010. 5. 17
 개정 2012. 7. 1
 개정 2018. 3. 1

제1조(목적) 우리대학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대상) ① 각종 시설물은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생수업,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외부단체나 기관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나 교육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(범위) 우리대학 시설물 중 사용가능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체육관 및 강당
- ② 강의실과 각종 실습실 및 부대시설
- ③ 기숙사 및 식당
- ④ 운동장

제4조(주관부서)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 중 우리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용을 제외한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교육지원처에서 주관한다.

제5조(신청 및 허가) 학생, 교직원, 외부단체 등에서 학교주관의 정규교육과정상 사용되는 목적 이외로 우리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(별지 서식 제1호)에 의한 사용단체, 목적, 사용기간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허가조건) 시설물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준수) 우리대학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사용 승인 목적이외의 사용금지
- ② 사용기간 및 시간준수
- ③ 안전 및 질서유지
- ④ 기타 우리대학에서 지시한 사항

제8조(사용제한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.

- ① 우리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
- ② 허가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

- ③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
- ④시설물 사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,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
- ⑤관리자의 정당한 통제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

제9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 설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변상)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) ①우리대학 주관에 의한 행사 사용과 시설물의 사용자가 우리대학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과정상의 필요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이외의 사용이거나, 또는 외부단체 등에서 사용시에는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- ②사용료는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사용료 감면) 총장은 시설물 사용의 목적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④ 본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⑤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⑥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별지 서식 제1호)

시설물 사용 신청서

| | | | | |
|---|---|----|----|----|
| 결 | 계 | 팀장 | 처장 | 총장 |
| 재 | | | 전결 | |

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|
| 신청인 | 성 명 | | 연락처 | |
| | 주민등록번호 (학생-학번) | | 주 소 | |
| 사용 시설물 | | | | |
| 기 간 | | | | |
| 목 적 | | | | |
| 내 용 | | | | |
| 반입장비 내역 | | | | |

신청인은 귀 대학의 “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”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.

200

신청인 : 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귀하

(별지 서식 제2호)

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요금표 】

2018년 3월 1일 현재

| 시설물명 | 사용구분 | 일반 사용시 | 냉난방 사용시 | 음향, 조명 사용 시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듀플렉스 | 1일 | 500,000원 | 1,000,000원 | 150,000원 |
| | 4시간 이내 | 300,000원 | 600,000원 | 80,000원 |
| 기숙사 | 일 반 | - | 15,000원 (1박) 10,000원 (2박 이후) | |
| | 학 생 (초, 중, 고) | - | 10,000원 (1박) 5,000원 (2박 이후) | |
| 컴퓨터실습실 | 1일 | 500,000원 | 600,000원 | |
| | 4시간 이내 | 300,000원 | 400,000원 | |
| 일반강의실 | 1일 | 100,000원 | 200,000원 | |
| | 4시간 이내 | 50,000원 | 100,000원 | |
| 현재관 강당 영상관 '봄' 청강홀 영상관 어울림관 영상강의실 | 1일 | 200,000원 | 400,000원 | 80,000원 |
| | 4시간 이내 | 100,000원 | 300,000원 | 50,000원 |
| 소극장 '숨' | 1일 | 300,000원 | 600,000원 | - |
| | 4시간 이내 | 200,000원 | 400,000원 | - |
| 잔디운동장 | 축구경기 | 100,000원 (1시간) (최저 2시간 사용) | - | 1일 80,000원 4시간 이내 50,000원 |
| | 행사 | 500,000원 (4시간 이내) 1,000,000원 (4시간~8시간) | - | |

※ 사용구분

1. 기숙사 1일 숙박 기준(13:00 ~ 익일 11:00)
 - 사용료는 1박 1인 기준 금액임 / 침구류 세탁비 포함
2. 초과사용료 : 시설물 사용시간 초과 시, 초과된 시간만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함.